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가단512827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6179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가단51282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 고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19,19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강애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가. 원고는 1996. 1. 8. 주식회사 D과 사이에, D이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84,800,000원, 보험기간 1996. 1. 8.부터 1996. 10. 31.로 하는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 G, H, I, C은 D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나. D이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1996. 3. 5.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6. 9. 17. E에게 184,8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 F, G, H, I,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26886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1. 10. 1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107,657원 및 그 중 184,800,000원에 대하여 1998. 8. 23.부터 2001. 8. 10.까지는 연 19%, 2001. 8.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2. 2. 확정되었습니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6. 9. 10. 자신의 장인인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

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고, 2007. 1. 30.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7. 2. 8. 채무자 C, 제3채무자 J로 하여 C의 입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9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J로부터 78,019,195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 C은 2006. 9. 10. 당시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습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가.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559 사해행위취소 판결

(1) 원고는 피고가 사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07. 2. 8. 채무자 C, 제3채무자 J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9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J로부터 78,019,195원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559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559호 판결은 C의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C이 2006. 9. 10.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019,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J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광주고등법원 2010나5907호 사해행위취소 판결

(1) 피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559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0나5907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그리고 위 판결은 2011. 5. 19. 확정되었습니다.

4. 피고의 비변제

가.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된 판결 주문 제2항(피고는 원고에게 78,019,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에 따른 지급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019,1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 다음날인 2011.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지

채권의 표시

채권액 : 171,980,805원

피고가 2007. 2. 8.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95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에 의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전부금 채권 250,000,000원
중 171,980,805원

- 끝 -